

서울고등법원 2022. 5. 18 선고 2021나20312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5. 18 선고 2021나203120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18가합570335 판결

전문

원고(탈퇴)A 주식회사

원고승계참가인, 피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이미영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

담당변호사 이재환

변론 종결2022. 4. 20.

판결 선고2022. 5. 18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8가합57033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화성시 AE 대 1,099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, AG 주식회사 사이에 2017. 3. 22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AG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. 3. 23. 접수 제585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).

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사안의 경과

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"화성시 AE 대 1,099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, 제1심 공동피고들과 AG 주식회사 사이에(제1심 공동피고들 중 AB, AC, AD에 대하여는 망 AF와 AG 주식회사 사이에)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AG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"는 청구를 하였고,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 소송 도중 원고로부터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신탁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한 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고,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.

2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1., 4.의 가., 나.의 1) 내지 3), 다.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이유의 "원고 승계참가인"을 "원고승계참가인"으로 변경한다.
- 제1심판결 12면 마. 2)를 삭제한다.
- 제1심판결 12면 3행, 4행, 27면 8행의 "피고들"을 "피고와 근저당권자들"로, 14면 1행, 17면 6행, 7행의 "피고 주식회사 C"을 "피고"로, 제1심판결 14면 14행, 17면 3행, 5행, 27면 15, 16행의 "위 피고들"을 "피고와 위 근저당권자들"로, 17면 제11행의 "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C'이라 한다)으로부터"를 "피고로부터"로 변경한다.
- 제1심판결 18면부터 22면 사이의 "피고 C"을 "피고"로, "피고 C과"를 "피고와"로, "피고 C이"를 "피고가"로, "피고 C으로부터"를 "피고로부터"로, "피고 C은"을 "피고는"으로, "위 피고"를 "피고"로 변경한다.
- 제1심판결 23면 1행의 "위 피고"를 "피고"로, 27면 15행의 "위 피고들과"를 "피고와"로, 16행의 "위 피고들은"을 "피고는"으로 변경한다.
- 별지 2 목록의 "피고"를 "근저당권자"로 변경한다.
- 제1심판결 22면 12행 다음에 아래 문장을 추가한다.

『피고는, 2012. 10. 31.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이 체결된 이후 2012. 12. 10.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, A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, AG, AO AG 사이에 부속약정서(을 가 제6호증)가 작성되었는데 부속약정서 제2조에서 AG는 AO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 모델하우스 설치 계약 체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, 기타 AN지역주택사업을 위해 AO의 책임으로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도 AG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비용은 AG의 채무이고, 따라서 AG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추진위나 AO가 원고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,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점, A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, AG, AO 누구도 위 부속약정서나

AO의 모델하우스 공사비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한 점,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AG가 개발사업에서 물러난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7. 3. 23. 작성된 점, 그 외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O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AG가 인수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AG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고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경란

판사권혁중

판사이재영

별지